

[별지 제24호서식] <개정 2013.3.23> [시행일:2012.7.1] 특별자치시와 특별  
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

제 호	검사공무원증표	(사 진) 2cm×2.5cm
소 속		
직 위		
성 명		
유효기간	20 . .부터 20 . .까지	
위 사람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 발행위에 관한 업무사항을 검사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.		
년 월 일		
국 토 교 통 부 장 관		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[인]		
시 장 · 군 수		

64mm×91mm

(보존용지(1종) 120g/m<sup>2</sup>)